

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		
의안번호	제42호	제 출 자	조배식 의원 외 4명
제 출 일	2022. 4. 13.	회부연월일	2022. 4. 13.

1. 제안이유

논산시의회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의원면직의 제한 (안 제2조)
- 나.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(안 제3조)
- 다. 위반자에 대한 문책 (안 제4조)

3. 검토의견

- 가. 이 규칙은 의원면직 제한 범위 및 위반자에 대한 문책 등을 규정하는 사안으로
- 나.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논산시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 (2022.1.13.)에 따른 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로써
- 다. 지방자치법 제52조, 제103조,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